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광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13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1.

발 의 자:임광현·조인철·이기헌

황정아 · 임미애 · 서영교

이정문 • 김기표 • 이건태

김정호 · 정일영 · 이재명

조계원 • 한민수 • 정진욱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로서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내고 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.

그러나 현행법은 국민의 성실한 납세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조사, 불성실가산세 등 제재 수단은 규정하고 있으나 성실한 납세자를 위한 제도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, 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하여 납부기한 등의 연장, 세무조사 유예를 허용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와 자진납부한 세액에비례하는 세금포인트를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

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81조의20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의2에 제81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1조의20(모범납세자 존중 문화 조성 등) ①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국가 재정에 크게 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모범납세자"라 한다)에 대한 사회존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납 세자를 선정하여 해당 모범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, 납부 고 지의 유예, 체납액 압류·매각의 유예, 세무조사의 유예 등 모범납 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세청장은 납세자의 체 납 기록, 조세포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범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 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 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 세금포인 트를 지급하고, 이를 향후 세금 납부,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- ③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81조의20(모범납세자 존중 문
	화 조성 등) ① 국세청장은 납
	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
	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
	세를 통하여 국가재정에 크게
	기여하는 등 타인에게 모범이
	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모범
	납세자"라 한다)에 대한 사회존
	중 문화 조성을 위하여 모범납
	세자를 선정하여 해당 모범납세
	자에 대한 납부기한의 연장, 납
	부 고지의 유예, 체납액 압류ㆍ
	매각의 유예, 세무조사의 유예
	등 모범납세자 우대제도를 운
	영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세청
	장은 납세자의 체납 기록, 조세
	포탈 여부 등을 고려하여 모범
	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
	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
	<u>마련하여야 한다.</u>
	② 국세청장은 납세의무자가
	자진납부한 세액에 비례하는
	세금포인트를 지급하고, 이를

향후 세금 납부, 납부기한 연장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.

③ 국세청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하며, 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